#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변경사유서

#### 1. 사유

: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목적에 대한 정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확대 그리고 사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회계 관련 일부 규정의 정비 필요

#### 2. 주요골자

-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"목적"정비
  - 목적 주체를 '정관 규정의 목적'에서 '법인 설립의 목적'으로 변경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규정 및 미반영 규정에 대한 반영
  - 산학협력단 업무범위 및 수입·지출에 대한 범위 확대
  -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
  - 산학협력단의 결산 및 감사에 대한 규정사항 정비
- 산학협력단의 조직에 대한 운영 및 수당에 대한 내용 정비
  - 산학협력단 사업의 확대 및 다변화에 따른 산하 조직(센터 등)의 신설 및 사업별 인력수급이 요할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
- O 정관 누락 부칙 재정비
- 3. 심의(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) : 원안가결

#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변경(안)

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정관 제·개정 이력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정 2004. 03. 01. 개정 2012. 03. 20. 개정 2016. 01. 01.

## 제1조 중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부천대학교 학칙에 따라 산학연협력 관련 체계 적인 지원으로 부천대학교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대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2.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- 3.~6. (생략)
- 7.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· 제공 및 홍보
- 8.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- 9.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
- 10.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따른 협력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
- 11. 정부 및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및 유아교육 또는 보육에 대한 위탁관리사업
- 12.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- 13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####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이사)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이사를 두며, 산학협력단의 단장 (이하 "단장" 이라 한다)이 이사가 된다.

####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부천대학교의 장(이하 "총장"이라 한다)이 임면한다.
-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수당) 단장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직책수당 및 업무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###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
- 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
- 7. 이자수입 및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·실습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
- 8.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
- 9.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- 10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

####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대학 시설 및 운영 지원비

- 5.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및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대한 경비
- 6.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
- 7.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
- 8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- 9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####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산학협력단의 결산)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1항의 "제17조의7 제3항"을 "제21조 제3항"으로 한다.

####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감사) 단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 직원이나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#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

#### 부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3월 1일로 한다.

제2조(소급적용)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 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지적재산권 등의 이전)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# 부칙

이 정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